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선 방안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과 필수용도 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전환전략 2033

• 종합토론회 2026 토론주제(안) 제안 발표('25.11.25)

○ 제안2. 안전한 제품을 위해 하위사용자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환경정의 황숙영 협동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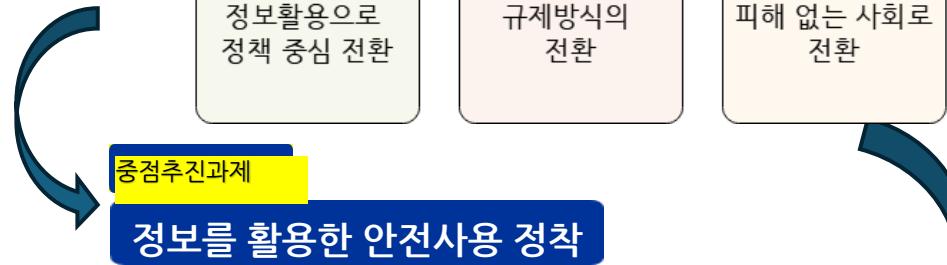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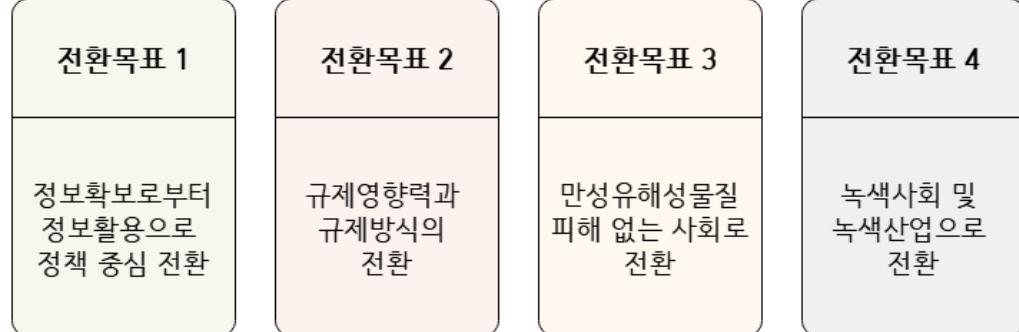
- (제안내용) 생활화학제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등록·신고된 화학물질 정보를 하위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위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할 필요. 하위사용자의 노력, 의무, 책임에 대한 고민 필요.

○ 제안4. 하위사용자 용도정보 제공의 구조적 어려움 (디아이지에어가스 장현석 과장)

- (제안내용) 화평법 제30조와 관련하여 제조수입자가 하위사용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위사용자의 책임 불균형, 역량 부족, 정보 공백 등). 제조·수입자의 등록·신고에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하위사용자의 용도제출 의무 명확화**, 정부차원의 간편 템플릿 제공, 정부 지원사업 확대 등을 제언

화학안전정책포럼 2026 주제로 제안

비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정책 중심 이동 및 정책 전환 기반 구축



- › 하위사용자 용도 변경
- › MSDS 안전사용 정보의 위상

- › 허가물질 및 제한물질 지정

- I. 왜 사고는 반복되는가?
- II. 제도의 공백
- III. 핵심과제1.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
- IV. 핵심과제2. 필수용도 개념 도입
- V. 2026년,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카펫 세척제 용도

용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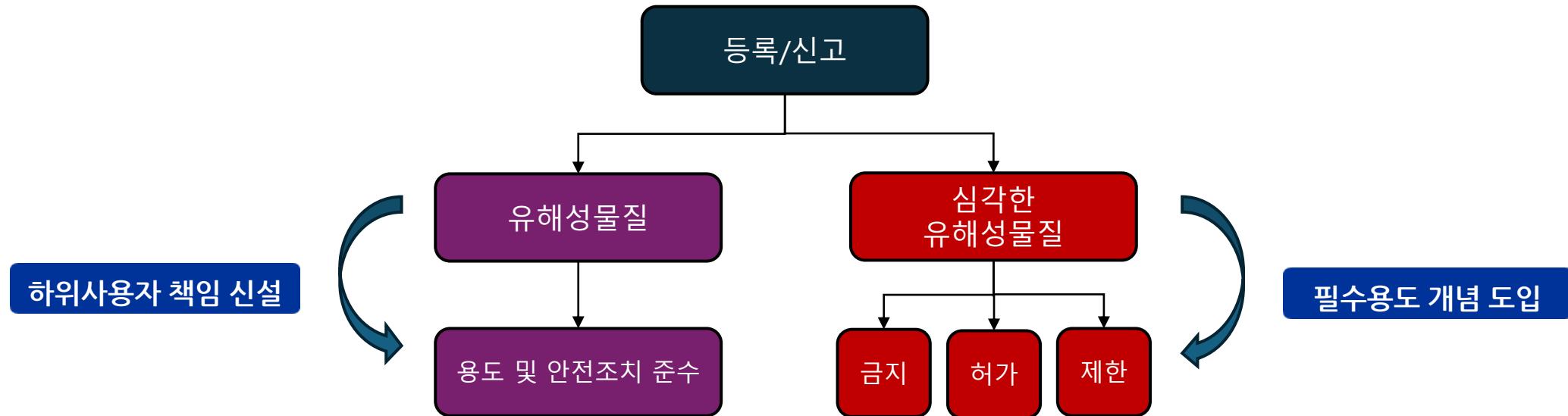
가습기살균제 용도

빠른 출시, 저렴한 원가, 이윤 극대화

왜 사고는 반복되는가? 바로 용도 변경

	가습기 살균제 사고	메탄올 실명 사고	세척제 집단 간 손상 사고
피해 규모	67만명(추산) / 1,553명 사망(신고)	6명 이상	36명 이상
주요 피해자	소비자(어린이 포함)	스마트폰 부품 가공 노동자	금속 세척 작업 노동자
원인 물질	PHMG, PGH, CMIT/MIT	메탄올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물질 변경 여부	용도 변경 (독성 실험 생략된 용도 사용)	용도 변경 (에탄올→메탄올 대체)	용도 변경 (규제 사각지대 물질로 대체)
관련 보고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16),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2016)	노동건강연대(20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8,2022)

화학물질 관리 체계(화평법)



1.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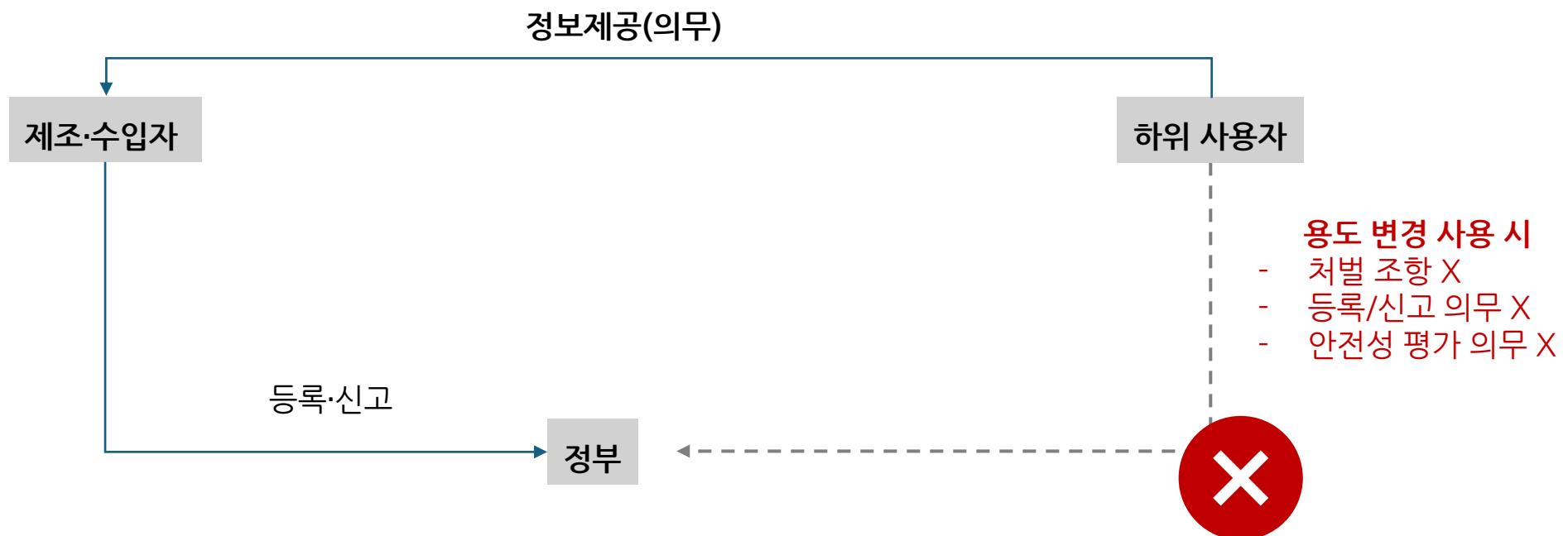


국내『화평법』 하위사용자의 의무

- 등록자(제조·수입자) 등록을 위해 용도 정보 요청 시 응해야 할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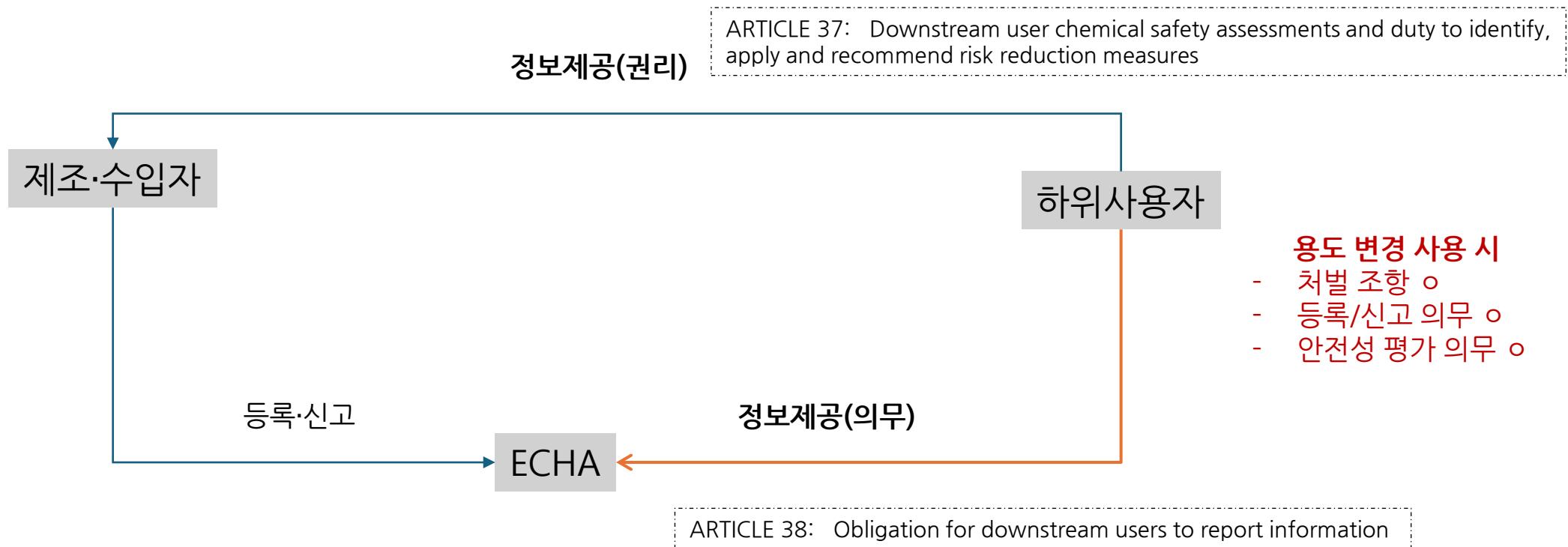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하위사용자는 제조 · 수입자가 등록·신고 요청 시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 · 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 『REACH』 하위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등록자(제조·수입자)에게 용도에 맞는 안전 정보를 요구할 ‘권리’
- 등록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때 스스로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



『화평법』과 『REACH』 하위사용자 비교

구분	국내 화평법	유럽 REACH
하위사용자의 지위	제조·수입자 요청 시 제공해야 할 <u>의무</u>	제조수입자에게 내용도에 맞는 정보 요구할 권리 하위사용자의 직접 등록(신고) <u>의무(책임 강화)</u>
용도 변경 사용시	별도 규정 없음	하위사용자가 직접 위해성 평가 후 당국에 <u>신고(제출)할 의무</u>
화학물질 안전 사용의 책임	별도 규정 없음	<u>법적 의무</u>
공급망 소통	새로운 유해성 정보 전달 <u>의무 없음</u>	새로운 유해성 정보 발견 시 상위 공급자에게 <u>전달 의무</u>

2013년 화평법 제정, 왜 하위사용자 책임은 빠졌다?

- 산업계의 저항과 정치적 부담 → 기업 부담과 사용 책임을 강제하기엔 정치적 동력 부족
- 정부 부처 간 장벽 및 환경부 권한 한계 → 하위사용자(공장/사용자) 주로 고용노동부(산안법) 소관
- 정보 확보(등록)을 우선한 전략적 선택



2013년에 놓쳤던
안전의 연결고리를 완성
하는 것!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

3대 책임 강화 방안

1 용도 외 사용 금지

등록·신고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화학물질 사용을 **원칙적 금지**



2 하위사용자 등록 근거

등록·신고된 용도와 다르게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하위사용자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MSDS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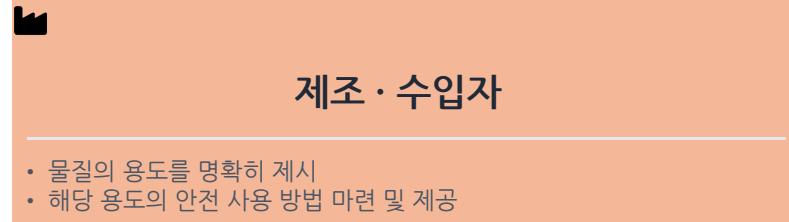
MSDS에 명시된 용도와 안전관리 지침 준수 의무화 또는
자체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지침 수립 및 이행 책임



처벌 강화

⚠ 임의적 용도 변경 및 안전관리 미준수 시 **강력한 법적 제재 부과**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부처간 협업 제안

MSDS 기반 하위사용자 이행 확보

"화평법 정보 → 산안법 감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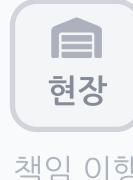
정보 공유 (화평법)

등록/신고 정보 제공



현장 이행 (산안법)

사업장 안전 사용 감독



이해당사자별 주요 입장 및 핵심 과제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 필요

- ✓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안전 고리 확립
- ✓ 공급망 소통 의무화로 용도변경 시 정보 전달 법제화

시민사회



법적 정합성 및 역량 한계

- ❗ 입증 책임 부담: 제조사와 동등한 책임 부과의 적절성 우려
- ❗ 역량 부족: 중소기업의 시험자료 비용 및 행정 부담

산업계



현장 이행 가능성 중시

- 🔍 법제화보다 현장 작동 여부가 중요
- 🔍 용도 변경 시 구체적인 승인 절차 및 기준 마련 필요

전문가



국회

단계적 도입 및 역할 재설계

- 단계적 도입: 용도 정보 제출 의무화 → 고위험군 우선 적용
- 역할 재편: 기후부(예방)와 노동부(현장 대응) 기능 강화



정부 (기후부·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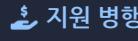
부처간 협업 강화 및 MSDS 연계

- 협업 필수: 단일 부처 관리 한계 인정 → 공동 대응
- MSDS 내실화: 화평법 정보와 산안법 MSDS 시스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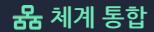
핵심 과제 (Key Challenge)

"산업계의 우려와 정부의 행정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원 병행

규제 강화와 함께
정보·기술·재정적 지원 구조 마련



체계 통합

국가 차원 정보 전달 체계 고도화
(MSDS 통합)



실효성 검토

화평법 등록 정보의
현장 작동성 정밀 검토 선행

(참고)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 개정(안)

<표 IV-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하위사용자 책임 신설안

신설안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등록된 용도 외 사용금지)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용도 외로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려는 용도에 관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등록된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평가위원회는 제2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용도의 유해성에 관하여 제14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기록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등록 또는 신고된 용도 외로 화학물질을 사용한 자

<표 II-6> 옵션2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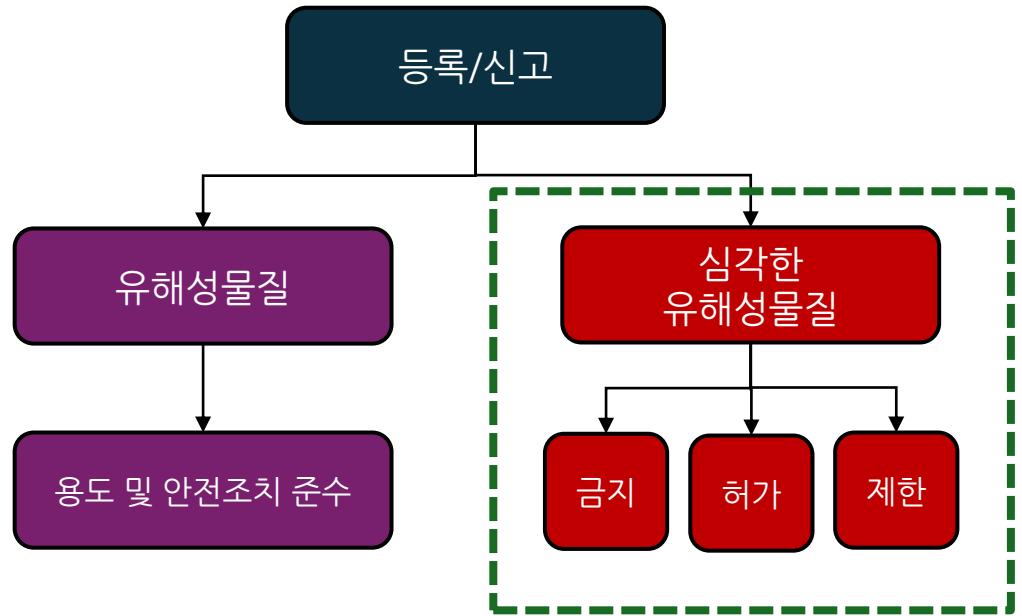
현행	개정안
<p>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확인,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제시된 사용 가능 용도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용도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확인하고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2. 필수용도 개념 도입



왜 허가·제한제도 작동하지 않을까

화학물질 관리 체계



화평법 허가물질 0종, 제한물질 14종

REACH 허가물질 24종, 제한물질 79종(후보물질 1/10)

허가물질 관리 실패 : **40%** 위반율(평균 18%)



복잡성, 비효율성

현행 허가·제한 제도 집행의 한계

1) 제도 목적의 불명확성

- 허가·제한제도의 근본 목적이 ‘고위험물질 퇴출’ 또는 ‘위험 관리’인지에 대한 사회 합의가 명확하지 않음
- 국내 허가·제한 도입 이후, 제도 목적 재정립 및 후속 정책 설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음

제도	정의
허가제도(제25조)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고시한 물질
REACH 허가 (Article 55.)	"To ensure the good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small>내부 시장 기능 보장</small> while ensuring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are protected <small>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small> through the progressive substitution of substances <small>점진적 대체 촉진</small> of very high concern"

2) 용도 정보의 불충분성



3) 사회경제성 분석 및 참여 구조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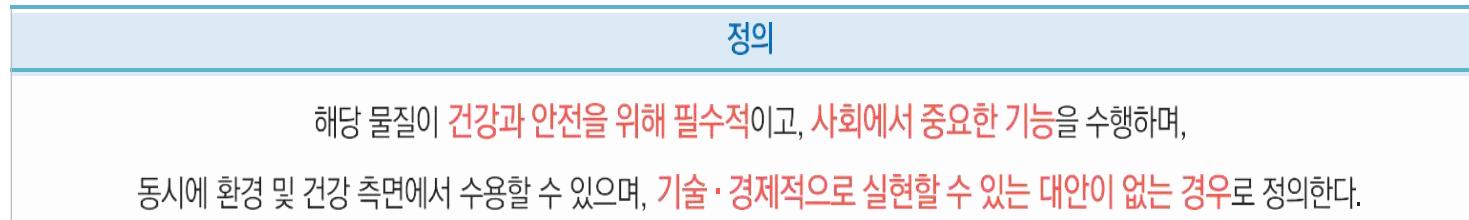
4)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 연계에 따른 구조적 부담

- 화평법 허가·제한물질 지정→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연계
 - 일률적 시설·취급 기준 적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5.8.5.)
- 공급망 단계별 (제조·수입·사용) 허가 의무 + 소량 취급 면제
 - 관리 부담 및 관리 공백 공존

규제 정당성·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 규제 물질 지정에 소극적

필수용도 개념이 제시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 방향

- 필수용도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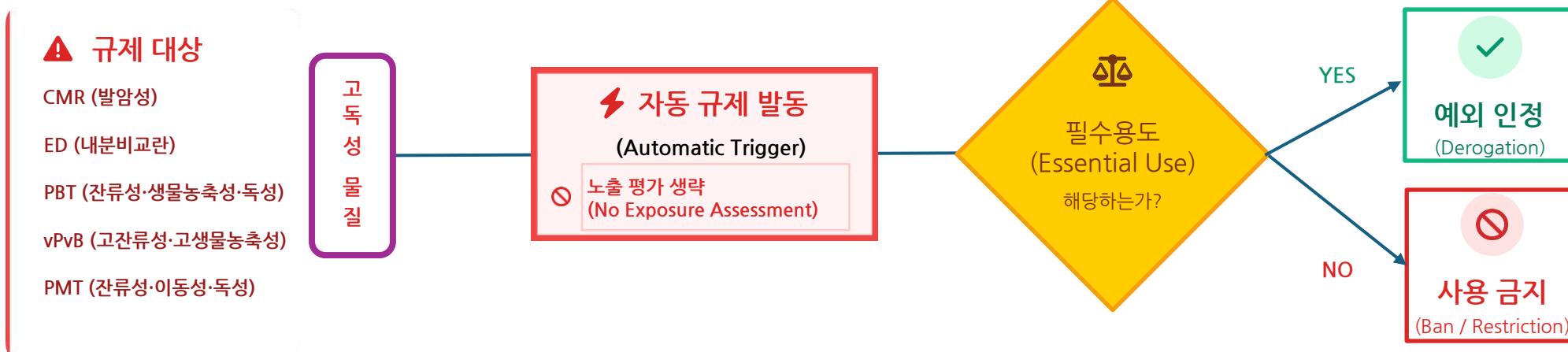


출처 : 몬트리올 의정서(Decision IV/25). 1992

- 고독성 화학물질 자동 규제 발동

Automatic Trigger & Essential Use Concept

물질의 유해성이 확인되면 노출 평가 없이 자동 금지를 발동하여
고독성 화학물질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수용도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EC, 2020)



EU 필수용도 개념에 관한 지침 및 기준(2024)

정의
해당 물질이 ①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고, ②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동시에 환경 및 건강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으며, 기술 · 경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③대안이 없는 경우로 정의한다.

필수용도 인정 조건	핵심 요소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가? (건강 · 안전 필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의료 : 질병 예방·치료 및 보건 위기 관리생명과 건강 유지를 위한 기본 조건 확보개인 및 공공 안전 확보
사회 핵심 기능 유지에 중요한가? (사회 기능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회 필수 자원 · 서비스 제공환경보호 및 생태계 복원과학 연구 및 개발문화 유산 및 전통 · 종교 관습 보호
더 안전한 대안이 없는가? (대안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술적 · 경제적 실현 가능성안전성 및 사회적 수용 가능성

필수용도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인정

출처 : EU집행위원회, 화학물질 관련 EU 법규에 적용되는 필수용도 개념에 관한 지침 기준 및 원칙, 2024

• 필수용도 평가(예)

물질의 기능부터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프로세스



비필수 용도 : 대체 가능하므로 퇴출



필수용도 : 생명 직결, 대체 불가능하므로 허용



평가 핵심: 1단계(기능)와 2단계(제품)를 넘어, 3단계(사회적 가치)가 입증되어야 필수용도(Essential Use)로 인정 가능

EU 필수용도 개념에 관한 지침 및 기준(2024)

- EU 필수용도 적용을 위한 8가지 핵심 원칙

 01 퇴출 가속화 비필수 용도는 즉시 금지하고, 필수용도는 대체물질 개발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유해물질 퇴출을 앞당김.	 02 사회적 정당성 판단 단순한 필요가 아닌 사회적 필수성을 판단. 물질의 기술적 기능, 최종 제품, 사회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	 03 사회 전체 관점 개별 소비자나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관점(공공의 이익, 보건, 안전)에서 사용의 정당성을 평가함.	 04 사용 맥락 중심 동일 산업 내에서도 용도와 맥락(Context)에 따라 필수성이 다름. (예: 엔진 내열성 vs 시트 미적 효과)
 05 누적 기준 충족 '사회적 필요성'과 '대안 부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효율성을 위해 제품군 단위로 단계적 평가 가능.	 06 노출 최소화 필수용도로 인정되더라도, 취약계층(어린이 등)과 환경에 대한 노출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줄여야 함.	 07 한시적 유예 필수용도는 영구적이지 않음. 시간제한을 설정하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함.	 08 대체 의무 및 혁신 기업은 구체적인 대체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EU는 R&I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대체물질 개발을 지원함.

필수용도 개념의 세계적 확산 및 적용

US

미국 EPA: TCE 규제 조치

TSCA Section 6(g)

🚫 금지 및 제한 조치

대상 용도	조치	판단 근거
모든 소비자 용도	즉시 금지	건강 위험 높음, 대체재 존재
드라이클리닝	즉시 금지	근로자 만성 노출, 대체재 존재
상업적 탈지 / 세척	1년 유예 후 금지	산업계 준비 시간 부여

✓ 필수용도 면제 (Essential Use Exemptions)

면제 대상	기간	면제 사유 (필수성)
DoD 선박 용도	10년 면제	국가 안보 필수, 대체 기술 개발 중
항공우주 부품 세척	10년 면제	안전성 필수, 극한 조건 대체 불가
TESLIN 합성지 제조	5년 면제	사회적 기능 유지, 전환 시간 필요
특정 화학 중간체	사례별 검토	대체 경로 개발 시까지 한시적 허용

EU

EU: PFAS 제한 옵션

REACH Restriction

RO1: 완전 금지

일반 소비자용 제품

화장품, 스키 왁스, 의류, 조리기구 등



즉시 금지 (유예기간 없음)

- 해당 용도는 필수적이지 않으며,
- 기술적·경제적으로 대안이 이미 존재함

RO2: 예외 사용 후 금지

산업용 및 첨단 기술 분야

반도체, 의료기기, 항공기, 산업용 직물 등



단계적 금지 (유예기간 부여)

5년

대안 개발 진행 중

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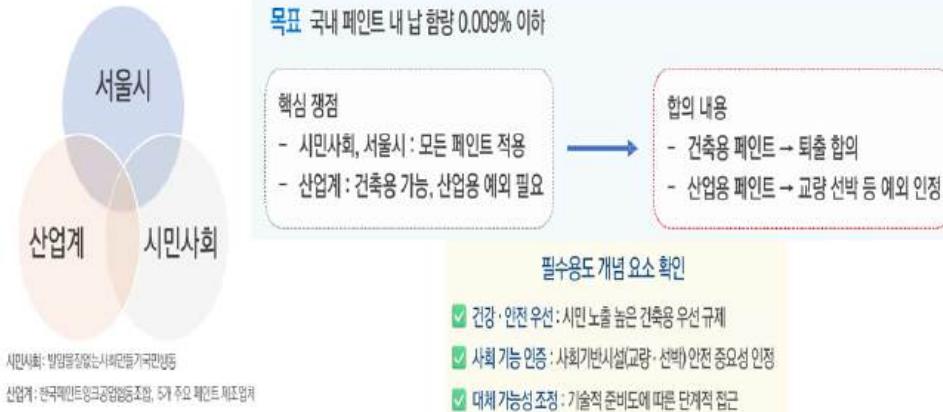
대안 없음 / 장기 개발 필요

💡 사회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궁극적으로는 대체되어야 함을 의미

국내 필수용도 개념 적용 가능성

1. 국내 필수용도 개념 적용 가능성 - 납 제한물질 지정 사례

서울시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디자인 업무 협약(2020)



납 기준 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 「환경보건법」(2021) ·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2023) 납 기준 법제 강화(0.06%→0.009%)
- 「화평법」제한물질 납 기준 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제한 물질	제한 용도
기준안	납 및 이를 0.06% 이상 함유 혼합물	어린이 목재 장난감 페인트 용도
개정안 (2022.7)	납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 혼합물	모든 페인트 용도 (항공기, 우주비행체, 군수품 용도는 예외)

연도	물질명	대상 산업	방식	특징 및 시사점
2012	SCCP	금속가공유 짧은 사슬 염화파라핀	▣ 노사민정 합의 노동조합, 시민단체, 산업계 합의로 자발적 사용 중단 합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유해물질 저감 보고서 발간. 법적 규제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 규제 수용성을 높인 모범 사례.
2016	미세플라스틱 Microplastics	세정 화장품	▣ 선 자발적 선언 → ▶ 후 법령 개정 주요 기업 사용 중단 선언 → 정부 화장품법 개정 반영	시장 주도의 선제적 대응을 정부가 제도화.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며 제도적 안착 성공.
진행 중	프탈레이트 Phthalate	향공 산업	▣ 필수용도 논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허가·제한물질 논의 과정에서 예외 적용 요구	특정 부품의 성능 유지와 국제 규격 충족을 위해 사용 불가피. 필수용도(Essential Use) 개념 도입 및 적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필수용도 논의와 유사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함을 보여주며, 이러한 합의가 정부 규제를 가속화함

『화평법』 필수용도 개념의 설계

사전 검토 단계

1. 필수용도 정의 법률 명시

필수용도란 “건강·안전 또는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이 없는 고위험 화학물질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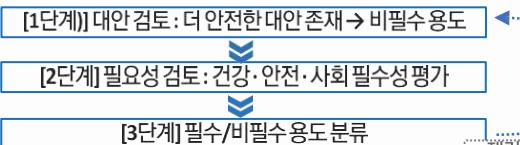
2. 필수성 검토 대상 물질 설정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중점관리물질 + 등록·신고 물질 중 고위험 화학물질

3. 필수성 검토 사회적 협의체 법제화

- 참여 :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 참여
- 역할 : 필수/비필수 용도 사전 선별(Triage) + 민주적 숙의
❖ 관리방안 연계
필수용도: 조건부 허용 + 안전관리 준수 + 대체 계획 + 일정기간 후 재검토
비필수 용도: 사용 저감 합의 → 사업자 자율적 중단 · 대체 로드맵 수립

필수성 평가(안)



● 공개를 통해 전 과정 투명성 확보

핵심 규제 대상 물질

허가 · 제한제도 연계

허가제도

- 비필수 용도로 분류되었으나 기업 사용 지속 희망, 전쟁·재난 등 국가 위기 등 예외적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허가 대상
- 협의체 논의 결과를 허가 신청 서류와 연계(기업·정부 부담 완화)

제한제도

- 위해성이 명확하거나 화학사고 등 발생 시 → 제한 대상

(참고) 필수용도 개념 도입 신설 (안)

<표 IV-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필수용도 개념 도입 법률 신설안

신설안

제2조에 제10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5. “필수용도”란 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및 그 유해성과 범용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필요성·대체가능성 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안전 또는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로서 제7조의2에 따른 사회적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용도를 말한다.

제24조의5 (필수용도 검토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 ① 고위험 물질의 필수용도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필수용도 검토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이하 “사회적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② 사회적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③ 사회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고위험 물질 중 필수용도 검토대상 선정 순서에 관한 사항
 2. 고위험 물질의 필수용도 신청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
 3. 고위험 물질의 용도 분류 및 용도별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고위험 물질의 필수용도 검토·관리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위험 물질의 필수용도 검토·관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고위험 물질의 필수용도 검토대상 선정, 용도 분류 및 재분류, 후속조치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회적 협의체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사회적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2 고위험 물질의 필수용도 분류 및 관리

제24조의2 (필수용도 검토 대상 물질의 선정 및 공고)

- ① 환경부장관은 고위험 물질의 용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 장관은 고위험 물질의 유해성과 범용성을 고려하여 필수용도 검토 순서를 정하고, 대상 물질 목록과 검토 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고위험 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필수용도 검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전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는 용도는 필수용도가 아닌 것(이하 “비필수 용도”라 한다)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사회적 필요성이 상당하고 대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3 (용도 분류 및 후속조치)

- ① 환경부장관은 고위험 물질의 용도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필수용도
 2. 비필수 용도
- ③ 검토 중인 용도 : 필수성 또는 대체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추가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한 용도
- ② 환경부장관은 고위험 물질의 사회적 필요성과 대체가능성을 계속 점검하여 제1항에 따른 용도 분류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고위험 물질을 제1항 제1호에 따라 필수용도로 분류된 용도로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에게 노출저감 계획의 수립·이행, 대체물질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고위험 물질을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필수 용도로 분류된 용도로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 저감 또는 중단 계획의 수립·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검토 중인 용도로 분류된 용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간 종료 후 재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전3항에 따른 권고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별 주요 입장 및 과제



법적 위상 및 이행력 강화

- ✓ 필수용도 판단 : 단계적 평가 체계
- ✓ 필수용도 거버넌스 : 전문위원회, 사회적 협의체

시민사회



현실적 걸림돌

- ❗ EU와 국내 인프라 격차: 정보의 축적도, 관리 체계 중복
- ❗ 필요성 입증 책임 전가에 따른 기업 부담

산업계



필수용도 심의 주체 명확화

- 🔍 주무 부처 및 이해당사자 이원화 필요성
- 🔍 법안 명문화 제안 : 절차적 타당성

전문가



국회

단계적 도입 및 역할 재설계

- 필수용도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 :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 절차적 정당성 : 기준 명문화, 사전 조정 절차, 행정 연계
- 국제 기준 조화 : 무역 장벽 예방



정부 (기후부)

화학물질 규제 실효성 제고

- 현행 제도 내 보완 우선: 화학안전정책포럼 활용
- 기업 자율 기반 녹색 화학 유인



핵심 과제 (Key Challenge)

"산업계의 우려와 정부의 행정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필수용도 정의 및 기준 명확화

필수용도 정의와 판단 기준 구체화



사회적 협의체 제도화

화학안전정책포럼 활용



실효성 검토

단계적 도입 로드맵
및 중소기업 지원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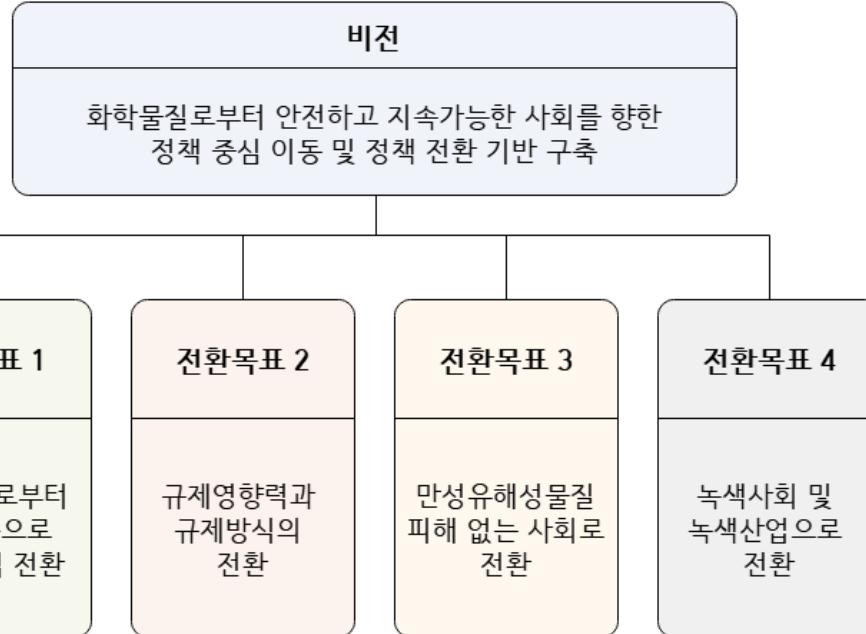


국제기준과의 조화

무역 장벽 예방

전환전략 2033

기후부와 이해당사자들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합의한 화학안전관리 중장기계획 문서



중점추진과제

정보를 활용한 안전사용 정착

세부 추진 과제	전환
하위사용자 용도 변경	하위사용자가 용도를 제조·수입업자가 등록한 용도 외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하위사용자 등록을 통해서만 용도를 추가할 수 있음
MSDS 안전사용 정보의 위상	하위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보(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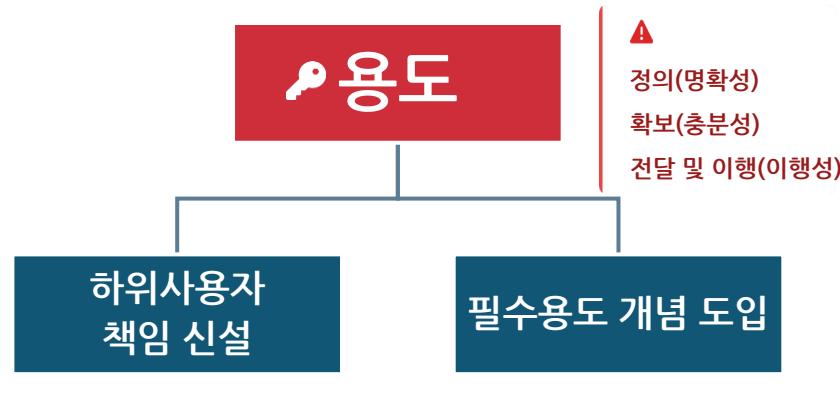
중점추진과제

필수용도 개념을 활용한 허가 및 제한 제도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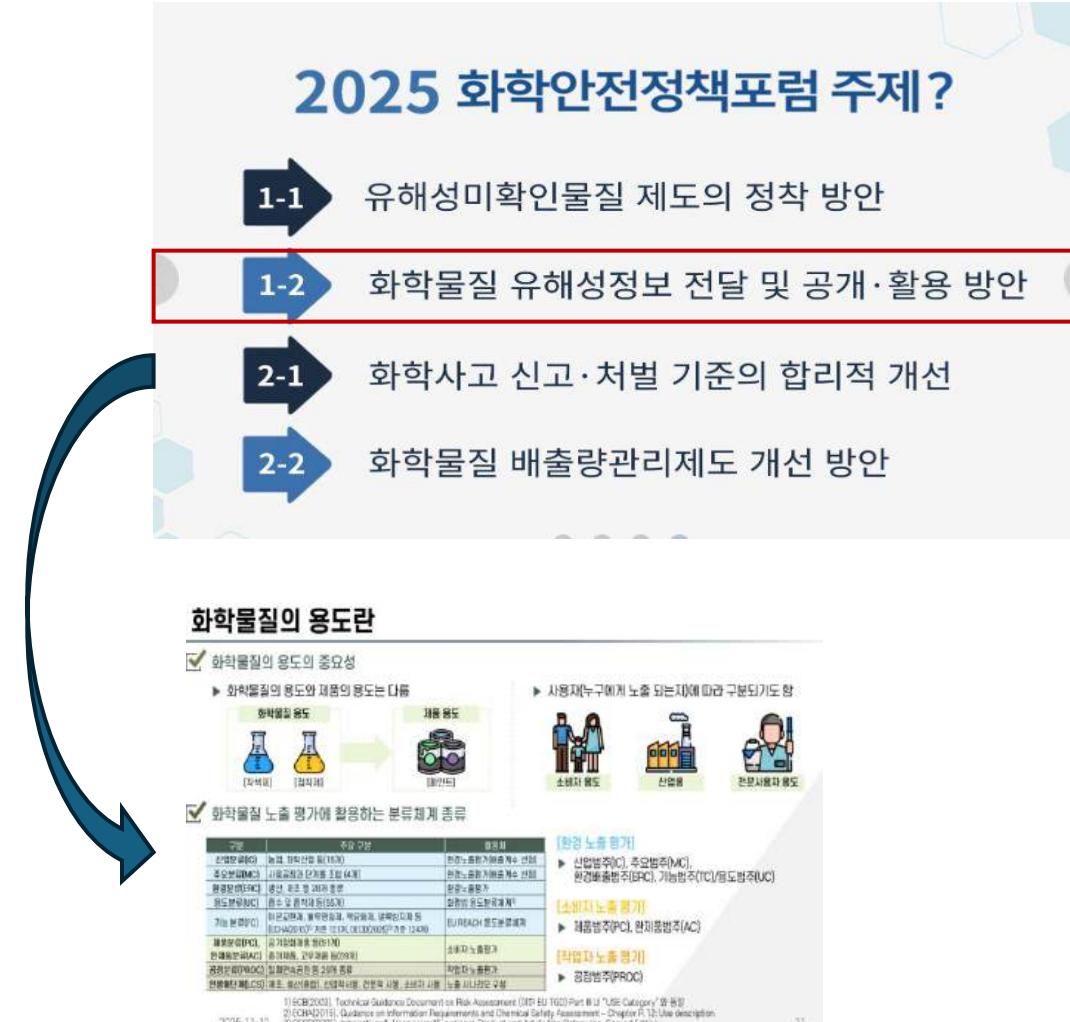
세부 추진 과제	전환
허가 물질 및 제한 물질 지정	필수용도 개념 정립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수용도 개념을 활용한 허가제한 절차 마련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화학안전정책포럼 2026 주제 제안



안전한 사용으로!
실효성 있는 화학물질 관리 체계 개선



감사합니다